-1	,	의인	안과 -				
섭	宁	(20				:)

수신 : 의 장

제 목: 해외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 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년 8월 10일 청 원 인

성 명: 정원준 외 27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 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성원 아파트
	78 전 년	성명 : 정원준
	건 명	해외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1년 8 월 11일

소개의견

청원인 정원준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입니다.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3년 8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해외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 개정 청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제12조2의 1항에서 대형마트와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지 않는 회사의 SSM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SSM의 동등한 경제활동 보장을 법률로서 규정할 것을 요청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청원이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SSM규제에 대한 조례제정이 자유롭지 못하였으 므로 규제대상에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를 포함시켜 개정합니다.

신구문대조표

현 행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정문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업시간 제한
- 2. 의무휴업일 지정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 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 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영업시간 제한
- 2. 의무휴업일 지정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 개 의 원

ó١

청워서

1. 제안이유

다음은 2012년 7월 16일 한겨레에서 조사한 기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홈플러스와 같이 3000㎡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받지만 매장 면적이 3000㎡가 안 되는 일본계 점포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지 않 기 때문에 이런 법망에서 비켜서 있다. 라고 제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3000㎡이상의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소규모로 국내에 진출한 해외 SSM을 규제하는 것이 피 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역 자치단체의 SSM에 대한 조례제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프렌 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2. 주요골자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 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2조 2(유통산업발전법)

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 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 프렌차이즈형 체 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혀 해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 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 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 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1. 영업시간 제한
- 2. 의무휴업일 지정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문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 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 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 프렌차이즈형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 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업시간 제한
- 2. 의무휴업일 지정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 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 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청원인 성명: 정원준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